

1.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(2019경찰채용2차)

- ① 형식적 의의의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수사를 말하며, 합리성이 요구된다.
- ② 범행재현의 3요소인 수사요소의 충족, 행위의 필연성, 사건의 형태성은 수사의 대상 중 수사의 사실적 내용에 해당한다.
- ③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시되며, 따라서 불심검문도 수사에 해당한다.
- ④ 공소제기로 수사는 종결되며, 공소제기 후 피고인 조사는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.

1. 정답 ②

(해설)

- ① (×) : 형식적 의의의 수사는 '수사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'라는 절차적 측면의 수사를 말하며, 합법성이 요구된다.
- ② (○) : 타당한 설명이다.
- ③ (×) : 수사개시 이전의 활동인 내사와 수사의 단서인 불심검문·변사체 검시는 수사가 아니다.
- ④ (×) : 공소제기 후 공소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행하여지는 수사기관의 활동, 예컨대 피고인조사, 참고인조사, 임의제출물의 압수도 수사의 일종이다.

2.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?

(2019경찰채용2차)

- ㉠ 경찰관은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또는 대상자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인에게 부근의 경찰관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㉡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거동수상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으로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.
- ㉢ 임의동행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.
- ㉣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임의동행 후 퇴거할 자유가 없다.
- ㉤ 경찰관은 임의동행시 강제연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- ① ㉠(O) ㉡(O) ㉢(X) ㉣(O) ㉤(X)
- ② ㉠(O) ㉡(X) ㉢(O) ㉣(X) ㉤(O)
- ③ ㉠(X) ㉡(O) ㉢(O) ㉣(X) ㉤(O)
- ④ ㉠(X) ㉡(X) ㉢(O) ㉣(X) ㉤(O)

2. 정답 ③

(해설)

- ㉠ (×) : 경찰관은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·지구대·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(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).
- ㉡ (○) : 타당한 설명이다.
- ㉢ (○) :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
- ㉣ (×) : 경찰관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(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), 임의

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.

㉠ (○) : 타당한 설명이다.

3. 「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」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2019경찰채용2차)

- ㉠ “수사이의”란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, “수사이의사건”이란 수사이의를 내용으로 하여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을 말한다. 단, 교통사고이의사건과 검찰에 접수되어 경찰에 이첩된 이의사건은 제외한다.
- ㉡ 각 지방경찰청에 이의조사팀을 설치하고, 이의조사팀장과 팀원은 수사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수사능력이 검증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.
- ㉢ 이의사건은 이의조사팀에서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조사팀 이외의 경찰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. 또한 이의사건은 접수전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, 부당한 수사이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력할 수 있다.
- ㉣ 이의조사팀의 업무범위는 부당한 접수거부, 수사절차 미준수, 사건처리 지연, 수사결과 불만족, 인권침해 등 이의사건의 조사·처리 및 이의사건의 대상이 된 수사관 및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외 판단 등이다.

3. 정답 ㉡

(해설)

- ㉠ (○) :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제2조 제1호, 제2호
- ㉡ (×) : 지방경찰청에 별표 1과 같이 수사이의조사팀(이하 ‘이의조사팀’이라 한다)을 둔다. 이의조사팀장과 팀원은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수사능력이 검증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(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제3조 제1항, 제2항).
- ㉢ (○) :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제6조 제1항, 제2항
- ㉣ (○) :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제4조 제1호, 제2호

4. 「(경찰청) 변호인 접견·참여 등 규칙」상 피의자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2019경찰채용2차)

- 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·법정대리인·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방해,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- ㉡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.
- ㉢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일시·장소를 정해 변호인에게 반드시 서면·전화·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㉣ 경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.
- ㉤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관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 다만,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① ㉠㉡

② ㉠㉢

③ ㉠㉣

④ ㉢㉤

- ① 피의자의 가족 또는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탐문하고자 할 때는 신분을 명시하고 사정을 고지한 다음 협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
- ② 평소 탐문대상 등 기초자료 준비, 협력자 확보, 기재(소형녹음기 등)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.
- ③ 많은 사람을 탐문하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고 관찰한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 면접순서는 이해관계인보다 가장 공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먼저 면접한다.

6. 정답 ①

(해설)

- ① (×) : 피의자의 가족 또는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탐문하고자 할 때는 신분을 숨기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

7. 미행과 잠복감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2019경찰채용2차)

- ㉠ 미행 중 보행속도는 대상자와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, 대상자가 갑자기 멈추어서면 미행자도 같이 멈추어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.
- ㉡ 미행 중 대상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라도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대상자의 눈의 위치보다 높은 곳에 시선을 두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- ㉢ 도보미행의 경우 대상자와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20m 내지 50m 가량 후방이 좋다.
- ㉣ 잠복감시의 종류에는 외부잠복감시, 내부잠복감시, 유인잠복감시가 있다. 이 중에서 유인잠복감시가 원칙이다.
- ㉤ 내부잠복감시를 하는 경우 외부잠복감시를 병행하는 것이 좋으며, 범인의 체포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실시한다.

- ① ㉠㉡
- ② ㉠㉢
- ③ ㉢㉣
- ④ ㉣㉤

7. 정답 ①

(해설)

- ㉠ (×) : 미행 중 보행속도는 대상자와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, 미행 중 대상자가 미행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같이 멈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.
- ㉡ (×) : 미행 중 대상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라도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대상자의 눈위 위치보다 낮은 곳에 시선을 두도록 유의해야 한다.
- ㉢ (×) : 잠복감시의 종류에는 외부잠복감시, 내부잠복감시, 유인잠복감시가 있는데, 이 중 외부잠복감시가 원칙이다.

8. 소년범 조사요령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2019경찰채용2차)

- ①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한다.
- ② 소년의 학교 또는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되 소년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소년의 가정, 학교 또는 직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.

- ③ 조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, 상대방이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 동질감을 일으키기 위해 적절히 은어를 사용하여 응대한다.
- ④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, 체포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.

8. 정답 ③

(해설)

- ③ (×) : 상대방이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 동질감을 일으키기 위해 적절히 은어를 사용하여 응대하는 경우는 소년법이 아닌 전과자에 대한 조사요령이다.

9. 송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(2019경찰채용2차)

- ㉠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, 압수물총목록, 기타서류, 의견서, 기록목록의 순서로 편철한다.
- ㉡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.
- ㉢ 기소중지의 경우 사건송치서 피의자의 성명 앞에 미체포라고 기재한다.
- ㉣ 의견서의 인적사항 기재 시 직업은 조사 또는 송치 당시의 직업을 기재하고,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 가장 최근의 직업을 기재한다.
- ㉤ 의견서의 전과사실 기재 시 전과사실이 수개인 경우 징역·금고·집행유예를 중한 순으로 기재하고,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징역·금고·집행유예 다음에 기재한다.
- ㉥ 의견서의 범죄사실 기재는 교사범, 방조범을 정범과 동시에 기재하는 경우 교사범, 방조범을 먼저 기재하고 나중에 정범을 기재한다.

- ① ㉠㉡㉢㉣
- ② ㉡㉢㉣㉤
- ③ ㉠㉡㉣㉤
- ④ ㉠㉢㉣㉤

9. 정답 ④

(해설)

- ㉠ (×) :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, 압수물총목록, 기록목록, 의견서, 기타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.
- ㉡ (×) :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 '무직'이라 기재한다.
- ㉢ (×) : 의견서의 전과사실 기재시 전과사실이 수개인 경우 징역, 금고, 집행유예를 연도순으로 기재하고, 벌금형, 기소유예처분 등을 징역, 금고, 집행유예 다음에 연도순으로 기재한다.
- ㉣ (×) : 의견서의 범죄사실 기재는 교사범, 방조범을 정범과 동시에 기재하는 경우 교사범의 경우는 교사범을 먼저 기재하고 나중에 정범을 기재하며, 방조범의 경우는 정범을 먼저 기재하고 나중에 방조범을 기재한다.

10. 「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」상 유치장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?

(2019경찰채용2차)

- 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(출)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,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출감시켜야 한다.
- ㉡ 신체, 의류, 휴대품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실시하여야 한다.
- ㉢ 경찰관은 유치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

을 사용할 수 있다.

- ㉔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.
- ㉕ 유치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평일에는 09:00 ~ 21:00까지로 제한할 수 있으나, 유치인의 안전 또는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① ㉔(X) ㉕(O) ㉔(X) ㉕(O) ㉔(X)
- ② ㉔(O) ㉕(O) ㉔(O) ㉕(X) ㉔(O)
- ③ ㉔(X) ㉕(X) ㉔(X) ㉕(O) ㉔(X)
- ④ ㉔(O) ㉕(X) ㉔(O) ㉕(X) ㉔(O)

10. 정답 ③

(해설)

- ㉑ (X) :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(출)감지휘서(별지 제2호 서식)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(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1항).
- ㉒ (X) : 신체, 의류, 휴대품(이하 '신체 등'이라 한다)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(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 제2항).
- ㉓ (X) : 경찰관은 유치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(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).
- ㉔ (O) :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3조 제1항
- ㉕ (X) : 유치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견을 제한하지 아니한다(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7조 제2항).

11. 「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」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2019경찰채용2차)

- ① 살인, 방화, 약취유인, 총기 제조·이용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성벽,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우범자로 선정한다.
- ②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.
- ③ 형사(수사)과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편입 후 1년 동안 매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경찰서장은 우범자가 타 관할로 진출한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우범자 전산입력카드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.

11. 정답 ①

(해설)

- ① (X) : 살인, 방화, 약취유인, 총기 제조·이용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성벽,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우범자로 선정한다(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). 즉, 횡수 규정이 없다.
- ② (O) :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
- ③ (O) :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
- ④ (O) :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

12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2019경찰채용2차)

- ① “범죄피해자”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), 직계친족을 말하며,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.
- ② “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”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,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수사·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·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, 의료제공(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), 구조금 지급, 법률구조, 취업 관련 지원, 주거지원,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,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12. 정답 ①

(해설)

- ① (×) : “범죄피해자”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(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).
- ② (○) :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
- ③ (○) :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제1항
- ④ (○) :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의2 제1항

13. 범죄감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(2019경찰채용2차)

- ① 지문자료에 의한 신원·범죄경력확인, 잠재지문 등의 채취·검사·감정은 자료감식에 해당한다.
- ② 현장의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 또는 주변에 물건을 버리거나 내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③ 현장감식은 현장임장 및 보존→증거수집·채취→현장관찰 및 기록→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실시한다.
- ④ 현장자료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반드시 참여시킨다.

13. 정답 ②

(해설)

- ① (×) : 잠재지문 등의 채취·검사·감정은 기술감식에 해당한다.
- ③ (×) : 현장감식은 현장임장 및 보존→현장관찰 및 기록→증거수집·채취→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실시한다.
- ④ (×) : 현장자료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회인의 선정, 사진촬영, 채취보고서와 같이 채취과정의 기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현장자료를 채취할 때 객관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중요하나, 반드시 피해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14. 시체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(2019경찰채용2차)

- ① 체내에 있는 각종 분해효소가 장기나 뇌 등에 작용하여 단백질, 지방질, 탄수화물 등이 분해되고 더 나아가 장기 등의 조직이 분해되는 것을 부패라 하며, 이는 시체의 후기현상에 해당한다.
- ② 시체의 부패는 통상 공기 중에서 가장 빠르고 흙 속에서 가장 느리다.
- ③ 사람이 죽기 이전에 외인에 의해 나타나는 신체상의 변화를 활력반응이라 하고 굳은 피 현상, 딱지형성, 피부밑 출혈, 시체얼룩 등을 들 수 있다.
- ④ 시체의 체온하강은 습도가 높을수록, 통풍이 좋을수록 수분이 빨리 증발되므로 하강의 속도는 빠르다.

14. 정답 ②

(해설)

- ① (×) : 체내에 있는 각종 분해효소가 장기나 뇌 등에 작용하여 단백질, 지방질, 탄수화물 등이 분해되고 더 나아가 장기 등의 조직이 분해되는 것을 자가용해라 하며, 이는 시체의 후기현상에 해당한다.
- ③ (×) : 시체얼룩은 활력반응이 아니라 시체현상이다.
- ④ (×) : 체온하강은 습도가 낮을수록, 통풍이 좋을수록, 수분이 빨리 증발하므로 하강의 속도는 빠르다.

15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(2019경찰채용2차)

-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·보존하여야 한다.
- ②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.

15. 정답 ③

(해설)

- ① (×) :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·보존하여야 한다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).
- ② (×) :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2항).
- ③ (○) :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
- ④ (×) :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). 즉,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.

16. 화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2019경찰채용2차)

- ① 발화부는 화재의 기점이 된 부위를 말하며, 출화부의 위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.

- ②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.
- ③ 전열기의 과열에 의한 화재일 경우 전열기 내부에 있는 전기선들에서 우선 단락현상이 나타난다.
- ④ 화재현장의 소훼상황 관찰은 약소부에서 강소부 방향으로 관찰점을 이동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.

16. 정답 ①

(해설)

- ① (×) : 발화부는 화재의 기점이 된 부위를 말하며, 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.

17.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2019경찰채용2차)

-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(선고유예 제외)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(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강명령)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.
-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(다만,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.
- ④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,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, 그 법정대리인(아동학대행위자 제외),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상담 및 교육위탁 조치를 할 수 있다.

17. 정답 ④

(해설)

- ① (○) :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
- ② (○) :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
- ③ (○) :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
- ④ (×) : 사법경찰관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, 긴급을 요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, 그 법정대리인(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, 변호사(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.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)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(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,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,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(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).

18.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(2019경찰채용2차)

- ① 엑스터시(MDMA): 곡물의 곰팡이,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, 무취, 무미하다.
- ② 엘에스디(LSD):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.
- ③ 마리화나: 성숙한 대마의 정상 꽃대 부분의 수지성 분비물을 알코올로 침출, 채취 또는 가마솥에 고아서 건조 또는 농축한 제품으로 대마초보다 10배가량 효과가 높고 마취성이 있어 혼수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.
- ④ 프로포폴: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나,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으며,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기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.

18. 정답 ④

(해설)

- ① (×) : 설문은 LSD에 대한 설명이다.
- ② (×) : 설문은 텍스트로메트로판(일명 러미라)에 대한 설명이다.
- ③ (×) : 설문은 해쉬쉬에 대한 설명이다.

19. 사이버범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(2019경찰채용2차)

- ① 해킹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획득하여 악용하거나 자료의 유출, 위·변조 및 삭제, 시스템 장애 및 마비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DOS 공격은 컴퓨터에 큰 부하를 발생시켜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'버퍼 오버플로우 버그' 등을 이용한다.
- ③ 컴퓨터 바이러스는 원시형 바이러스→암호화 바이러스→은폐형 바이러스→갑옷형 바이러스→매크로 바이러스의 단계로 발전하였다.
- ④ 사이버 도박, 사이버 스토킹, 사이버 성폭력, 사이버 명예훼손, 사이버 협박, 메일폭탄은 일반적 사이버범죄 분류에 속한다.

19. 정답 ④

(해설)

- ④ (×) : 메일폭탄은 사이버테러형 범죄의 분류에 속한다.

20. 「공직선거법」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(2019경찰채용2차)

- 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·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,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.
- ② 대통령선거기간은 23일,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.
- ③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

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- ④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의 장·정당의 대표자·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)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. 다만 결혼식에서의 주례는 할 수 있다.

20. 정답 ④

(해설)

- ① (○) : 공직선거법 제11조 제1항
② (○) :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, 제2호
③ (○) :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
④ (×) :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의 장·정당의 대표자·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기부행위(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)를 할 수 없다(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).